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축물 해체공사의 행정 절차 합리화 》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3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제220643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대수선 범위 중 해체 대상 조정(안 제2조)	3
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0조제2항)	6
다.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신고시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 생략(안 제30조제3항)	10
라. 해체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세분화(안 제30조제4항)	13
마.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안 제30조제6항)	16

I.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제220643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2.

다. 회 부 일 : 2024. 12. 13.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신고를 하는 소형 건축물이라도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 해체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전부에 대해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 해체 절차에 대해 간소화 요구가 빈번하고, 건축물 외벽의 경미한 마감재 수선도 해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여 건축물 해체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수선 범위 중 해체 허가 대상 조정(안 제2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해체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구체적 제시(안 제30조제2항)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안 제30조제3항)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등은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검토하도록 함.

라. 해체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세분화(안 제30조제4항)

해체계획서 내용 중 해체공사의 공정이나 안전관리 등은 해체작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함.

마. 해체 허가 기간 단축(안 제30조제6항)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해체 허가 기간 단축

4. 검토의견

가. 대수선 범위 중 해체 대상 조정(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대수선의 범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대수선은 제외한다)-----. 8. (현행과 같음)

안 제2조는 「건축법」¹⁾에 따른 대수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을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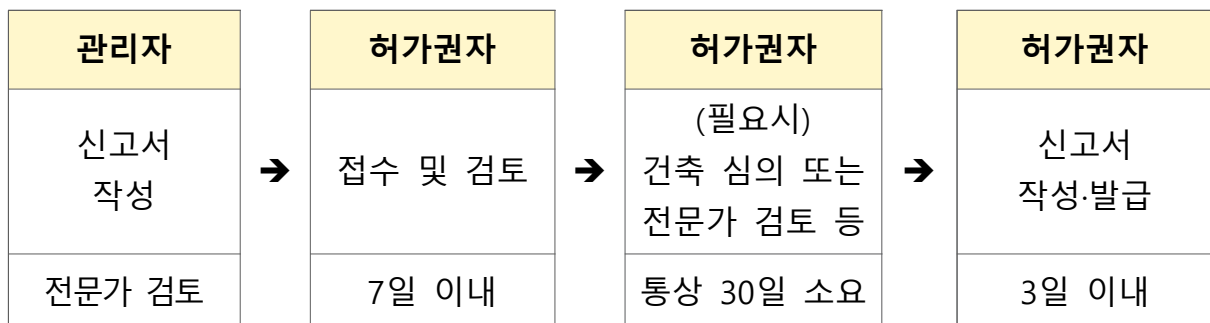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²⁾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고 함)의 허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건축물 외벽의 경미한 마감재 수선도 해체 신고를 해야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수선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방화구획, 외벽 마감재 교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해체공사 신고 절차 】



※ 자료: 국토교통부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상기의 표처럼 마감재 공사 해체의 경우에도 신고 절차에 최대 40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해체공사 사고 중 마감재 해체 등 경미한 공사의 사고 건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아래 표 참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행정절차를 합리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해체공사 사고 현황 】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마감재 해체 등 경미한 공사 사고 건수
2020년	60건	9명	56명	0건
2021년	56건	19명	53명	0건
2022년	38건	11명	29명	0건
2023년	44건	10명	35명	0건
2024년	46건	8명	39명	0건

※ 자료: 국토교통부(2024년 12월 31일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범위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해체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u>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u>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3. (생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u>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u> ----- ----- ----- -- 2. 3. (현행과 같음)

안 제30조제2항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주변의 범위에 대해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³⁾은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할 때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②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 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그 외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은 ①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③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1항단서에 따른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의 조항은 해체건축물이 쓰러질 경우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

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됨. 그러나 “해체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축물의 높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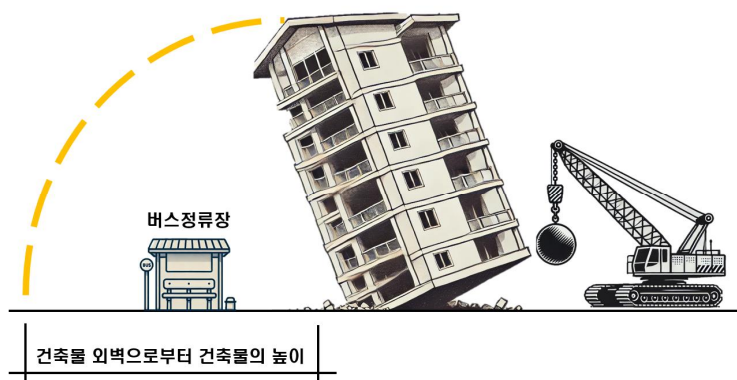
【 해체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

대구광역시 북구	경기도 평택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거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근 25m	인근 10m	인근 8m	인근 5m	해당 건축물의 높이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내용은 동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조항과 동일한 문구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그림)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찬성하는 입장임. 아울러,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⁴⁾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 합리적 적용 필요”(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4. 8. 22.)

-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20m 내’로만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모, 높이 등과 관계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게 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신고시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 생략(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③ ----- ----- ----- ----- ----- ----- ----- 다만, <u>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고 해체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u>

안 제30조제3항은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에 대해서는 건축사, 기술사(이하 “전문가”라고 함)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30조⁵⁾는 관리자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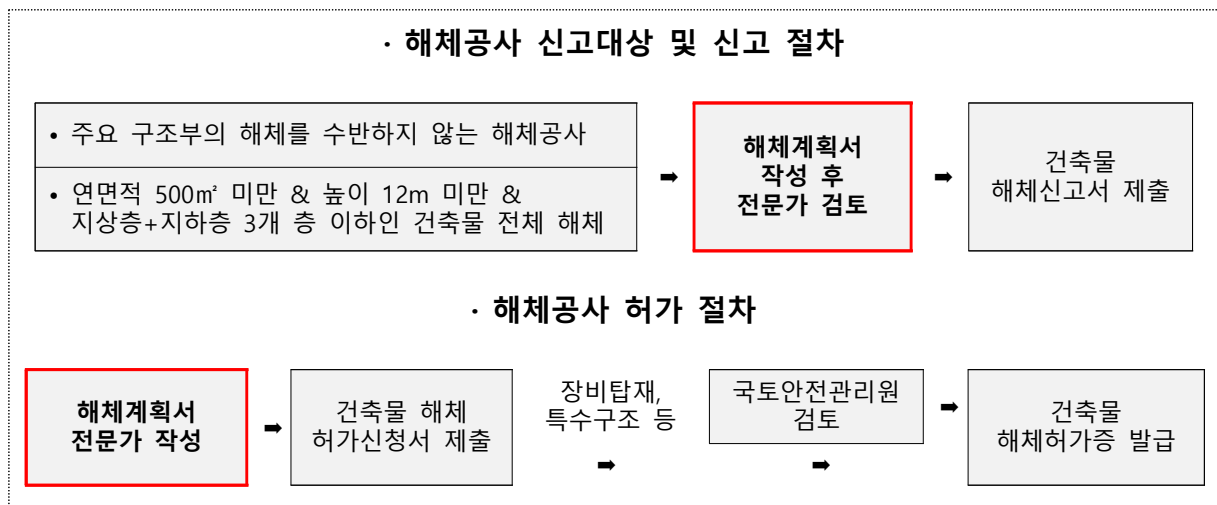
5)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체할 때 해체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 시 전문가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체 허가·신고 주요절차 】



※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농어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을 해체할 때, 빈집 철거 비용 외에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농어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의 해체 절차에 대해 간소화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 (이하 생략)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 해체신고에 따른 해체계획서 제출 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사 기간이 짧고 단순한 공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⁶⁾에서도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수용’으로 의결한 바 있음.

참고로, 농어촌지역의 빈집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신고에 따른 해체계획서 제출 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제2203738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03850호)이 제22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음.

6)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2. 19.)

-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따르는 절차와 비용이 과다하여 빈집정비사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계획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위원회에서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하였다.

라. 해체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세분화(안 제3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 ----- ----- ----- ----- ----- -----, 다만, 해체 계획서의 내용 중 해체공사의 공정 이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안 제30조제4항은 건축물 해체를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해체계획서 내용 중 해체공사의 공정이나 안전관리대책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해체작업자⁷⁾가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7) 「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지난 2021년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 제출 시 전문가의 작성(해체허가 시) 또는 검토(해체신고 시)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⁸⁾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작업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함에 따라 실제 이행이 어려운 계획서가 작성되고, 전문가 작성 분량에 따른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해체계획서 중 해체공사의 공정 등에 대해서는 해체작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안전성 검토는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전문가의 작성 분량을 축소함으로써, 해체계획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⁹⁾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이와 같은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체공사 중 사고 발생 시 해체계획서상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우

8)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2월에 개정됨(2022. 8. 4. 시행).

9) 현재 허가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평균 비용은 1,041만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3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자료: 국토교통부)

려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본·EU 등 해외의 경우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¹⁰⁾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임(아래 표 참조).

【 해체 신고시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 해외 사례 비교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주)	EU
해체계획서 작성	· 신고대상 건축물 (발주자 작성 → 건축사, 기술사 검토) ·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사, 기술사)	발주자 (해체작업자 작성)	발주자 (해체작업자 작성)	발주자 (해체작업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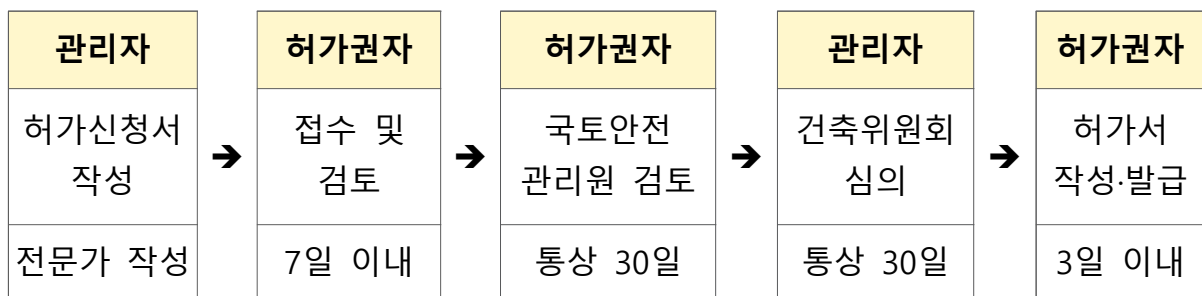
※ 자료: 국토교통부

10) 단, 구조검토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자가 작성하고 있음(자료: 국토교통부).

에게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② 건축물에 10톤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통상 30일)를 받은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통상 30일)를 받아야 함에 따라,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해체공사 허가 절차(국토안전관리원 검토) 】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5
